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 교권보호(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

미원초등학교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줌.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음.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이므로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됨.

### 1.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6871호, 시행 2020. 7. 30.]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2. 교육기본법 [법률 제14601호, 시행 2017. 6. 22.]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743호, 2019. 12. 10. 일부개정]

#### ■ 폭행, 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상해)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멍살을 잡고 흔든 경우(폭행)  
 ·교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힌 경우(상해)

#### ■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지역의 교육의원을 통해 피해 교원을 징계받게 하겠다 라고 말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피해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

#### ■ 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공언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진실 또는 허위)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 모욕(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공언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 행위

- 교사를 특정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
- 교사의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며 경멸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 수업태도를 바로 하라는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보인 경우

### ■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출석부, 교사의 업무수첩 등을 뜯어내어 훼손하거나 감추는 경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범죄행위

- 교원에게 알몸사진등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경우
- 휴대 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①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 ■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공무집행방해 :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업무방해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 성희롱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수업시간 중 교사에게 “가슴이 없어서 등 인줄 알았어요”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 성적인 물건(피임용품)이나 야한 사진을 교사가 볼 수 있도록 교탁 위에 놓거나 교사의 동선상에 떨어뜨려 놓는 경우

###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학교장이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어 학교 수업등을 녹음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